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23

2016년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혜련, 서윤기, 박호근의원 외 33명

나. 발 의 일 : 2016년 10월 5일 다. 회 부 일 : 2016년 10월 7일

라. 상 정 일 :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1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 혜 런 의원)

가. 제안 이유

-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해 가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현행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조례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대하여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
- 이에 교육·복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평가 실시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및 안 제8조까지).
-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 회의 운영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다. 입법예고(2016. 10. 13. ~ 10. 20)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임.
-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민 간이 참여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는 것으로, 2015년에 11개 자치구에서 2016년에는 20개 자치구로 확대되었음.

서울형교육혁신지구는 학교-마을 연계사업, 청소년 자치·동아리사업, 민관학 거버 넌스 운영 등이 주요 사업이며, 2016년 10월에서 11월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의 종합평가 및 성과분석 등이 시행될 예정에 있음.

ЭН	2015년 혁신지구 (2년 지정)		
구분 	혁신지구형(7)	우선지구형(4)	
지정구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구로, 금천, 관악	종로, 서대문, 동작, 강동	
필수 과제	•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사업(중학교) • 학교 • 마을 연계 방과후 사업 • 일반고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 • 민관거버넌스(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운영	・민관 거버넌스(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 ・학생의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지원시업	⇔
사업비	1개구당 20억 (시 7.5, 교육청 7.5, 구 5)	1개구당 3억 (전액 시비)	-

	2016년 혁신지구 (1년 지정)	
	혁신지구형(12)	우선지구형(4)
	서대문, 동작, 강동 (혁신지구형 전환) 성북, 양천(신규)	종로(기존) 동대문, 강서, 영등포 (신규)
>	 학교교육 지원사업 마을 학교 연계 지원사업 청소년 자치 · 동아리 지원사업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 '16년 지정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개선사항 필수과제 조정 사업비 : 혁신지구형 20—15억, 우선지구형 3—10억 	

1개구당 15억

(시 5. 교육청 5. 구 5)

1개구당 10억

(시 3, 교육청 2 구 5)

기존(종로) : 3(전액 시비)

- 지난 10월 24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제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고, '교육은 자치구와 시의 고유권한 밖의 사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부조화로 인한 현실과 법의 괴리', '지방회계법상 교육·학예에 관한 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위법한 부분에 대한 실무적 검토 필요성 제기'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음.
- 최초 하나의 조례로 서울시와 교육청을 관할하려 하였으나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서울시 와 교육청에 쌍둥이조례 발의를 시도하였으나 법제처의 불가통보로 좌절되어 교육청은 운 영에 관한 조례와 함께 본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음.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장우윤의원 발의)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에 있음.
- 민관학의 협치로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1)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조2)에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분장한 사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계획수립 및 운영은 교육청의 「서울형교육혁신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우윤의원발의)으로 발의하고 , 협력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담당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본 조례가 각각 발의되었음.

^{1) 「}지방자치법」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세부 검토

○ 본 조례안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본 조례') 으로 발의되었으나, 혁신교육지구의 정식 명칭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이며, 혁신교 육지구의 운영은 교육청의 소관으로 하는 바,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반 영하기 위해 제명이 정확한 사업명과 함께 시장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제 정 안	수 정 검 토 안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조례안	관한 조례안

○ 안 제2조 정의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시민, 교육전문가, 학계 등과 교육협력체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자치구 및 해당 교육지원청이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 주체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보완 필요성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제 정 안	수 정 검 토 안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시민, 교육전문가, 학계 등과 교육협력체를 구축하여 운영하는사업을 말한다.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 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 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 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는 것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³)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 성권을 침해하며, 교육감과 시장이 서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닌 교육감의 행위로 시장이 지원의 책무를 지는 것은 법률위배 소지가 있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검 토 안
제3조(책무) ① (생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혁신교육지구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하여야 한다 .	적 <u>지원할 수 있다.</u>

^{3) 「}지방자치법」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안 제4조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평가시 구청장이 실시한 자체평가와 교육감이 실시한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평가로 평가와 환류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종합평가의 목적과 분야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제 정 안	수 정 검 토 안
제4조(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①(생략) ②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시 <u>구청</u> 장이 실시한 자체평가와 교육감이 실시한	제4조(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시 <u>구청</u> 장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교육감이 실시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한 종합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된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는 서울형혁신 교육지구 운영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와 그 기능 과 역할이 충돌할 여지가 있으며.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운영 중인 '교육·복지민관협의회', '교육지원심의 위원회' 등 유사기 능을 가진 위원회가 다수 존재하는 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위 원회의 설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는 전문가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⁴)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검 토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③ (생략) ④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의원 2 명과 혁신교육지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u>시장이 위촉한다.</u>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③<현행과 같음> ④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의원 2 명과 혁신교육지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양성평등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시장이 위촉한다.

○ 안 제7조는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고, 연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바, 공무원의 임기를 해당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앙성평등 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정 안	수 정 검 토 안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2016.8.31.)되어 있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후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0.31.)가 의결되는 것이 조례 제정체계상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 론 요 지: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서울형혁신지구 지원에 관한 사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함.

나. 주요내용

- 안 제명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지원의 관한' 조례임을 명확히 함.
- 안 제2조 중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의 목적과 주체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 중 시장의 책무를 적법한 범위로 조정함.
- 안 제4조 중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효율적 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 제 제6조 중 외부위원을 「양성평등법」에 맞게 위촉하도록 함.
- 안 제7조 중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함.
- 8.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1423 번호 관 련 제 안 년 월 일 : 2016년 12월 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서울형혁신지구 지원에 관한 사무 범위를 명확 히 하고,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명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지원의 관한' 조례임을 명확히 함.
- 안 제2조 중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의 목적과 주체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 중 시장의 책무를 적법한 범위로 조정함.
- 안 제4조 중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효율적 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 제 제6조 중 외부위원을 「양성평등법」에 맞게 위촉하도록 함.
- 안 제7조 중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함.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명 중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 원"으로 한다.
- 안 제2조제2항 중 "지역의 시민, 교육전문가, 학계 등과 교육협력체"를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로 한다.
- 안 제3조제2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4조제2항 중 "구청장이 실시한 자체평가와 교육감이 실시한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교육감이 실시한 종합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6조제4항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양성평등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 안 제7조제1항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조 례안	서울특별시 <u>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u> 에 관한 조례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시민, 교육전문가, 학계 등과 교육협력체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하여야한다. ③ (생략)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u>지원을 할수 있다.</u> ③ (제정안과 같음)
제4조(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①시장은 서울형혁 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시 구청장이 실시한 자체평가와 교육감이 실시한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①시장은 서울형혁 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시 구청장이 실 시한 자체평가 후 교육감이 실시한 종합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③(생략) ④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의원 2명과 혁신교육지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 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u>시장이 위촉한</u> <u>다.</u> ⑤ (생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③(제정안과 같음) ④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의원 2명과 혁신교육지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 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양성평등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③ (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 감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①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시 구청장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교육감이 실시한 종합평가 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 2. 혁신교육지구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3. 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한 평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내부위원은 5명 이내로 업무관련 부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당

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④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의원 2명과 혁신교육지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양성평등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담당과 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